

영등포구의회  
제20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 
민간위탁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3. 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344호로 2018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청년건축학교의 시설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## 3. 주요 내용

### ○ 대상시설

연번	시설명(가칭)	위 치	규 모	정원
1	청년건축학교	문래동3가 46 트리플렉스 B110호	189.02㎡ (57.2평)	40명

### ○ 이용대상

- 건축기술교육 희망하고 취·창업을 준비하는 청년(15세~39세)

○ 서비스 내용

- 건축기술분야(도배, 장판, 타일, 미장)교육
- 취업상담 및 연계
- 시설유지관리

○ 운영방법 : 전문기관 선정 민간위탁운영

○ 소요예산 : 금161,064천원(시비)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집행내역	비고
민간 위탁금	계	161,064	
	인건비	80,400	인건비, 4대 보험료 등
	운영비	10,000	공공요금, 시설관리비 등
	사업비	70,664	교육 및 실습 등 프로그램 운영

○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 5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,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문래동3가 46 트리플렉스 B11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, 연면적 189.02㎡, 정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의 건축기술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설이며,

○ 위 시설의 이용대상은 건축기술교육을 희망하고, 취·창업을 준비하는 15세~39세 청년이며,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건축기술 분야(도배, 장판, 타일, 미장)교육, 취업상담 및 연계 활동 등임.

○ 청년일자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심리적,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진입 촉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확충 되어야 할 것이며,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검토결과, 청년건축학교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·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청년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
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

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개정 2013.12.12>

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  
<개정 2013.12.12>

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**제6조(청년사업 추진·지원)**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직업상담, 적성검사,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
2. 구인·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
3.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
4.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
5.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

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청년사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
2. 청년의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
3.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실시
4.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성화 수 있다